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지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07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3.

발 의 자 : 박지원 · 장종태 · 박지혜
허영 · 박해철 · 이개호
이재관 · 허성무 · 이광희
김동아 · 임문영 · 소병훈
김준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「형법」 제51조 각 호의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는 없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함.

그런데 기소유예처분은 비록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기는 하나 수사경력자료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차 발생하면 검사의 처분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등 불이익한 조치임. 따라서 혐의가 없는 억울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이를 헌법소원으로 우회적으로 다투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퉴 수 있게 하여야 하고, 이는 헌법재판의 증가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심리부담 완화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58조제3항 신설 등).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8조(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)

- ③ 수사의 결과 혐의가 인정되거나 검사가 「형법」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피의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소송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불기소의 불복에 대한 적용례) 제2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第258條(告訴人等에의 處分告知)</u> ① ・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<u>제258조(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)</u> ① ・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수사의 결과 혐의가 인정되</u> <u>나 검사가 「형법」 제51조의</u> <u>사항을 참작하여 한 불기소처</u> <u>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피의자</u> <u>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</u> <u>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소송</u> <u>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</u> <u>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</u>